

하동군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

「하동군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 및 「하동군의회 회의 규칙」 제23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.

2025. 6. 24.

하동군의회의장 강 대 선

1. 조례명: 하동군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

2. 제안이유

-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돌봄 노동자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복리를 증진함으로써 하동군 돌봄서비스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1조, 제2조)
- 나. 군수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(안 제3조, 제4조)
- 다. 종합계획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(안 제5조, 제6조)
- 라.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(안 제7조)
- 마. 돌봄노동자 지원센터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8조)
- 바. 돌봄노동자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(안 제9조)
- 사.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(제10조)

4. 의견제출

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2일(수)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하동군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의견제출 사항

- 1)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유무와 사유, 수정의견)
- 2)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3) 기타 참고사항

나. 의견제출 방법

- 1) 팩스: 055-880-2939
- 2) 하동군의회 홈페이지(<http://www.hdcl.go.kr>) 열린마당(의회에 바란다)
- 3) e-mail: bcfarc@korea.kr

- 붙임 1.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.
2. 조례안 1부. 끝.

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□ 조 례 명: 하동군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

○ 성명(단체명):

○ 주 소:

○ 전 화 번 호:

조례안 내용(조항)	찬 성 여 부		의 건	비 고
	찬성	반대		

하동군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돌봄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환경과 처우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돌봄노동자”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 - 가.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요양요원
 - 나. 「노인복지법」 제27조의2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돌봄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
 - 다. 「노인복지법」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
 - 라. 「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7호에 따른 활동지원인력
 - 마. 「아이돌봄 지원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아이돌보미
 - 바. 그 밖에 「근로기준법」 등 노동 관계 법령이 적용되며 가목부터 마목까지와 유사한 돌봄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하동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이 인정하는 사람
2. “돌봄서비스 제공기관”이란 돌봄노동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이용자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.

제3조(군수의 책무) ① 군수는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군수는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 「근로기준법」 등 노동 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.

③ 군수는 돌봄노동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·폭행·성희롱·성폭력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.

제4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5조(종합계획) ① 군수는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정책 방향과 목표
2.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한 실행 방안
3. 돌봄노동자의 안전보장 및 근무환경 개선 방안
4. 종합계획 수립·시행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
5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6조(실태조사) ① 군수는 종합계획의 수립·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돌봄노동자의 고용현황 및 노동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.

② 군수는 관련 기관에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
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관련 단체 등에

위탁할 수 있다.

제7조(사업) 군수는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.

1. 돌봄노동자를 위한 상담 및 조사·연구
2. 돌봄노동자의 역량 강화 교육 및 훈련
3. 돌봄노동자의 인권침해 예방 및 권리 옹호
4. 돌봄노동자의 안전 보장
5. 돌봄노동에 대한 인식 개선
6. 그 밖에 군수가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8조(돌봄노동자 지원센터 설치·운영)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돌봄노동자 지원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을 위하여 센터의 업무를 관련 공공기관이나 비영리법인·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센터의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9조(돌봄노동자의 신분보장) 군수는 돌봄노동자가 근무하는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·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

하여야 한다.

제10조(협력체계 구축) 군수는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·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폐지) 하동군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.